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설치 근거 마련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24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법률제정의 필요성	2
2. 주요 검토사항	8
3. 고용노동부 의견	25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6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의 기본이며 국가의 산업정책과 사회정의는 노동의 안전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속에서 산업재해는 여전히 매년 수 천 명의 생명과 삶을 앗아가고 있으며 현장의 위험은 더 복잡하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규제·감독 중심의 사후관리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재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또한 산업안전 관련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산업안전 분야 R&D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임.

아울러 산업안전의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위험

을 기술로 진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관리할 제도적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이러한 구조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정책은 행정과 연구, 현장이 단절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제도에 반영되지 못한 채 정책은 통계에 머무르면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약화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이 제도적으로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평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체계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나아가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지정, 자원조달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기금의 투입이 현장의 혁신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안전 정책의 중심축을 규제에서 기술혁신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산재 예방의 국가 책임을 과학기술의 언어로 실현하고 데이터와 기술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예방형 산업안전 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과학적·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안전정책과 국가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산업안전을 증진함(안 제1조).

나. 산업안전기술,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안전데이터 및 전문기관의 개념을 정의하여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체계의 법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정부가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목표 및 중점분야, 중점기술 개발 전략,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안전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기술성과의 실증·보급 및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위험공정·신산업분야 안전기술 연구개발, 인
공지능·센서·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개발, 산업안전 관련 장비
·시스템의 성능검증 및 표준화,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등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안전데
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에 안전데이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익명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8조).

자. 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
고, 민간부담금 또는 매칭펀드 방식 적용, 기술이전·사업화·국제
협력·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지원이 가
능하도록 함(안 제9조).

차. 정부가 산업안전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확산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타.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설치하고, 산업안전 관련 데이터·통계의 관리, 산업안전 기준·지침·평가기준의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안전 기술기준·시험방법·인증기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파.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예방기금 중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출연금,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금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제정안은 산업안전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기관의 설립·지정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정법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재해의 예방’으로 압축될 수 있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같고, 제정안 제3조의 정부의 책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6호에¹⁾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각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부 조문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신설되는 조문의 수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산업안전기술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이나 기술개발로 침해될 수 있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기술의 대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노동의 영역 등 등을 법률로 규율하여야 할 상황 등도 예상되는 등 법률의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입법형식에 있어 제정법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²⁾ 등 어떠한 입법 형식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

1) 제4조(정부의 책무)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가 필요해 보이고,

제정안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정안의 개별 조문이 정책 결정과정과 지원 내용의 측면에서 기존 법령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검토하고, 향후 산업안전기술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입법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총칙의 내용(제1조부터 제4조까지)과 위원회나 시스템 등 현행법의 제도에 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에 추가·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은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2. 주요 검토사항

(1) 용어 사용의 일관성 필요(제명, 목적 및 정의)

[해당 조문]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적·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정책과 국가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산업안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기술”이란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스템 및 그 응용기술을 말한다.
2.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이란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표준화 및 현장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안전데이터”란 재해발생 현황, 위험기계·설비, 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산업현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정안은 핵심개념을 “산업안전기술”로 명칭하면서 제명과 관련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안전과 보건 두 영역에

서의 사업주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³⁾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장의 책임자, 관련 지정 전문기관, 전문가 자격 및 업무 영역에 사항 등을 규정함에 있어 안전과 보건 두 영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⁴⁾ 고려하면 해당 용어에도 보건을 포함시켜 “산업안전보건기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명과 제정안의 핵심 개념인 “산업안전기술” 등 모든 용어에 “보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수정(예시)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안 제2조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체계(안 제1조)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정책(안 제1조)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
안전 데이터(안 제2조제3호)	산업안전보건데이터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핵심의무로서 안전조치 의무와 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38조와 제39조에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제정안 중 다음 용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와 맞추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현장의 재해(안 제2조제1호), 재해(안 제2조제3호)	산업재해
위험요인(안 제2조제2호)	유해·위험요인
위험기계·설비(안 제2조제3호)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안 제2조제3호)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안 제2조제2호 중 “산업안전기술의 실증”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모호한 바, “실증”을 “시험과 검증”이라고 개념 정의 후 사용하는 유사 입법례와⁵⁾ 제정안 전체에서 “실증”이라는 용어가 두 차례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과 검증”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데이터 관련 사항

[해당 조문]

제2조(정의) 3. “안전데이터”란 재해발생 현황, 위험기계·설비, 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산업현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안전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안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안전데이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비식별화·익명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안전데이터의 범위와 제출 대상 기관의 한정 필요

그런데 제정안 제2조제3호는 “안전데이터”를 “재해발생 현황, 위험기계·설비, 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산업현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사실상 작업환경을 둘러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안전데이터에 해당되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8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데이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안전데이터 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법령 등에⁶⁾ 의하여 직무의 범위가 정하여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제정안의 민간기관이 의미하는바를 대강이라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데이터의 범위와 제출 의무자를 법률에서 알기 어렵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⁷⁾ 참고하여 안전데이터와 민간기관을 정의할 필요가 있음.

6) 「정부조직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등

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민간기관의 범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송유관관리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나. 안전데이터의 수집, 통합관리 및 활용 필요성 검토 필요

안 제8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안전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통합관리체계는 법률에서 통합정보 관리체계 또는 통합관리 정보체계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대부분 분산되고 파편화된 정보를 연결·연계·통합하여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신속하게 이를 활용하며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고 있음.⁸⁾

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양식산업발전법」

민간기관의 안전데이터에는 개인의 재산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공정이나 영업 등과 관련된 기업 비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민간기관의 안전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고,

안전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를⁹⁾ 근거로 안전분야(위험성평가 지원, 직종별 플랫폼 등), 보건분야(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건강관리카드 등), 교육분야(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이러닝 등), 문화분야(안전심리검사, 안전의식수준향상 등), 미디어(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VR전용관 등) 등의 시스템을 통합한 ‘산업안전포털’이¹⁰⁾ 2025년부터 구축되어 운영중 인바, 해당 시스템과 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집·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기본계획의 주기 설정 필요

[해당 조문]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9)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0) 【참고】 산업안전포털 통합구축 현황

1. 산업안전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분야
 2. 산업안전기술의 현황 및 중점기술 개발 전략
 3.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안전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술성과의 실증·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¹¹⁾ 같이 그 주기는 정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 및 기후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산업안전기술의 경우 AI의 개발 및 상용화 등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성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는바, 기본계획의 주기를 설정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1)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

[해당 조문]

제6조(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 ①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64)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¹²⁾ 법제사법위원회에서¹³⁾ 가결되어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에 있음.

그런데 제정안 제6조제1항의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의제2제5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

12) 2026-02-12

13) 2026-02-23

련이 있는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¹⁴⁾ 고려하여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보다 안전한일터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성이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5)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정부 역할 관련 사항

[해당 조문]

제7조(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위험공정, 신산업분야 및 사업장 대상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2. 재해예방을 위한 인공지능·센서·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개발
3. 산업안전 관련 장비·시스템의 성능검증 및 표준화
4.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②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용화 연구를 포함하며, 기술의 상용화와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민간참여 및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구기관·대학(이들의 부속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기업 등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14)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담금 또는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술이전, 사업화,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① 정부는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예방기금 중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출연금,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을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재원 운용 및 사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위험공정, 신산업분야 및 사업장 대상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과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 등을 규정하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바,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와 방향을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내용이 명확해지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7제3항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

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는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의 관리과정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예고 및 공모 -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선정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중앙행정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까지 규정하며¹⁵⁾ 연구개발 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여¹⁶⁾ 이후의 유지·관리·활용·공개·연계 등은 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함.¹⁷⁾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민간소유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성과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관리과정을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대상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9조제2항도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 방식

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6)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¹⁸⁾ 차용한 규정으로 이해되는데, 역시 대상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연구개발비 산정 방식을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 밖에 제9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은 모두 정부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통합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고, 안 제13조제3항은 특별회계 등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재정법」의 규정과¹⁹⁾ 부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보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18)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19)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6) 전문인력 양성

[해당 조문]

제10조(산업안전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산업안전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는 산업안전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²⁰⁾ 등의 방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유사입법례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전문기관 지정

2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조문]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절차·업무범위 및 관리·감독, 지정취소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의 전문기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확산이라는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해되므로 유사 입법례를²¹⁾ 참고하여 지정요

2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시험·검사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⑦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에 따른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건, 지정절차 및 취소절차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8)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의 설립

[해당 조문]

제12조(국립산업안전과학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립·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 관련 데이터·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 통계·지표의 작성·관리
2.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지침·평가기준의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3. 산업안전 관련 기술기준·시험방법·인증기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표준화
4. 그 밖에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과학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2조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야 부속기관 설치가 가능하기에 정부의 설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직제 규정사항으로서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제6조의 1호)’ 등의 기능을 열거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존 기능을 활용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 연구 경험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고용노동부 의견

고용노동부는 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안 제8조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안 제12조의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의 설립 여부는 산업안전 연구개발의 효율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 연구조직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재원 활용에 관한 제13조제3항은 제정안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참고

산업안전포털 통합구축 현황

1 시스템 통합 : 36종 (포털에 통합하여 운영)

No.	분야	단계	시스템명
1	건설	24년 통합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시스템
2	안전	24년 통합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지원시스템
3	안전	24년 통합	산업재해를 확인서 발급시스템
4	문화	24년 통합	전자민원센터
5	인증	24년 통합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6	인증	24년 통합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홈페이지
7	인증	24년 통합	인증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8	재정	24년 통합	안전투자 혁신사업(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
9	재정	24년 통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시스템
10	안전	25년 통합	중대재해 알림e
11	보건	25년 통합	화학물질정보(MSDS) 홈페이지
12	보건	25년 통합	직장인 마음 상담상담
13	건설	25년 통합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14	안전	24년 통합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포함*)
15	공통	25년 통합	공단 대표 홈페이지(영문)
16	교육	25년 통합	안전보건교육포털
17	교육	25년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 홈페이지
18	교육	25년 통합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하이브리드)
19	교육	25년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직무교육센터
20	교육	25년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
21	보건	25년 통합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22	보건	25년 통합	화학물질정보(MSDS) 앱
23	안전	25년 통합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24	안전	25년 통합	위험상황신고 앱(하이브리드)
25	문화	25년 통합	안전보건 콘텐츠 BigData플랫폼
26	문화	25년 통합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27	문화	25년 통합	안전보건VR전용관
28	문화	25년 통합	안전심리검사
29	문화	25년 통합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
30	문화	25년 통합	안전보건법령 스마트검색
31	연구	25년 통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32	연구	25년 통합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영문)
33	인증	25년 통합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34	인증	25년 통합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영문)
35	인증	25년 통합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모바일(하이브리드)
36	인증	25년 통합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

② 데이터 연계 : 4종 (기존 시스템 유지)

No	분야	시스템명	통합 후 삭제/유지	내용	연계
1	안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스템	유지 (데이터 연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스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통합되기 전까지 현재 사이트 유지('25년말) - 포털 마이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데이터 연계	
2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	유지(개선)	- 산업안전포털 내 교육시스템 분리 운영을 위해 edu.kosha.or.kr 사이트 전면 개편 예정	
3	공통	공단 대표 홈페이지	유지(개선)	- 포털 사이트(고객용)와 구분 - 공단 기관 사이트를 전면 개편	
4	공통	K2b	유지 (데이터 연계)	- 최초부터 데이터 연계 목적으로 설계	
-	보건	근로자건강센터 정보관리시스템	유지 (데이터 연계)	- 개발은 완료하였으나, 시스템 운영업체로부터 API를 전달 받지 못함 → 해당업체가 API 완료시('26년 추진) 시스템 연계 예정	'26년 예정
-	문화	KOSHAHUB	유지 (데이터 연계)	- 포털과 링크로 연계는 완료하였으며, 데이터는 '26년 검토 후 연계 예정	'26년 예정

③ 신규 서비스 : 4종 (포털에 기능 구현)

No	분야	단계	시스템명	내용
1	재정	25년 통합	스마트안전장비 품목제안	- 공단 홈페이지 내 게시판 형식으로 단순 안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부터 결과안내까지 고객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포털 내 서비스 추가
2	안전	25년 통합	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시스템	- '24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해당실(산업안전실) 의견을 반영하여 포털 내 서비스 추가
3	보건	25년 통합	건강관리카드	- 건강관리카드 활성화를 위해 대민서비스 중심인 포털 내 서비스 추가(산업보건실 요청)
4	안전	25년 통합	재해다발기계 안전점검 기술지도	- 기존 Off-line 신청기반 사업을 On-line화 하여 고객에게 실시간 신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털 내 서비스 추가

<추가> 앱 서비스 : 2종 (12월 서비스 예정)

No	분야	단계	시스템명	내용
1	공통	추가	산업안전포털 앱	- 대민서비스(민원신청, 확인알림 등)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전용 앱 개발 및 서비스 추가 * 위험상황신고 앱, 위기탈출 안전보건(10분 안전보건교육) 앱
2	공통	추가	외국인노동자 전용 앱	- 외국인노동자 전용 안전보건 정보 앱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전담팀 요청으로 신규 개발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적·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정책과 국가연구개발의 연계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산업안전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기술”이란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스템 및 그 응용기술을 말한다.
2.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이란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표준화 및 현장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안전데이터”란 재해발생 현황, 위험기계·설비, 화학물질, 작업환경 등 산업현장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산업안전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안전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분야
 2. 산업안전기술의 현황 및 중점기술 개발 전략
 3.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안전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술성과의 실증·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산업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 ①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위험공정, 신산업분야 및 사업장 대상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2. 재해예방을 위한 인공지능·센서·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개발
3. 산업안전 관련 장비·시스템의 성능검증 및 표준화
4.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②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용화 연구를 포함하며, 기술의 상용화와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안전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안전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안전데이터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정보 및 기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비식별화·익명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참여 및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구기관·대학(이들의 부속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기업 등이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담금 또는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술이전, 사업화,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산업안전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절차·업무범위 및 관리·감독, 지정취소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립산업안전과학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립·검증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 관련 데이터·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 통계·지표의 작성·관리

2.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지침·평가기준의 정립을 위한 연구·개발

3. 산업안전 관련 기술기준·시험방법·인증기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표준화

4. 그 밖에 산업안전기술 및 안전관리 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과학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① 정부는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예방기금 중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출연금,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을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재원 운용 및 사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